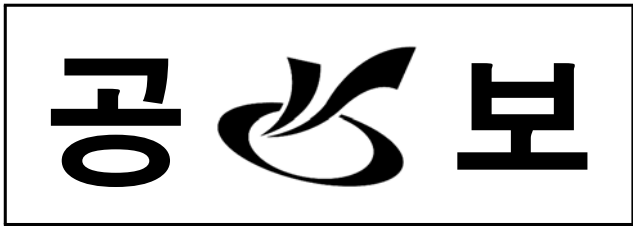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관의 장
람	

제 681호
2009년 2월 16일 월요일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251호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·공고 2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256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3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257호 공시송달공고 4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262호 신조공인공고 5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263호 무단방치자동차강제(폐차)처리 공고 .. 7

회							
람							

공	고
---	---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251호

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·공고

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7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9년 2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명칭 :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2번지 일원
3. 사업면적 : 51,491m²
4. 공람내용 : 정비계획(안)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(안)
5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30일간
6.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73)

인천광역시서구청공고 제2009-256호

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

건축신고(신축)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2009년 2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**가. 도로지정 근거**

- 건축법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
-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(도로대장 등)

나. 도로지정 내역

건축허가 위치	건 축 주	도로지정 현황		
		도로위치	도로지정 및 규모	비고
인천서구 금곡동 677-12번지	김 형 진	금곡동 677-12 번지 현행도로부분	도로너비:4.0m 도로길이:30m 도로면적: 51.0㎡	

다. 공고 방법 : 구보게재, 구홈페이지 게시, 관할 동사무소 게시

라. 도면 열람 :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(☎ 032-560-3232)에 비치

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09-257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귀하께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이사감)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9.03.17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,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등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09년 2월 13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제 목 :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
2. 처분근거 : 건축법 제80조
3. 처분원인 : 건축법위반
4. 처분대상

성 명	주 소	위반위치	채납액(원)	압류할 재산내역	
				재 구 산 분	재산의 표시
이호근	인천 부평구 갈산동 363 태화(A) 6/105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19-3	3,616,000	집합 건물	인천 서구 검암동 519-3 목성빌딩 제1층 제1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5.6㎡ 소유권대지권 357.1분의 29.58

5. 공고기간 : 2009.02.14. ~ 2009.02.27.
6. 게시장소 : 시보,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
7. 기타사항 :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, 납부의사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 032)560-4712)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262호

신조 공인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년 2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공인신조 사유

-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신설에 따른 공인 신조

2. 공인의 사용일 : 2009년 2월 5일

3. 신조공인 인영

“별첨 참조”

신 조 공 인 인 영

공 인 명	규 격(cm)	공인인영	비 고
인천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출납원인	1.8×1.8		옥외광고물 정비기금신설
인천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관인	1.8×1.8		옥외광고물 정비기금신설
	- 이 하	여 백 -	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263호

무단방치자동차 강제(폐차)처리 공고

1.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무단방치자동차강제(폐차)처리 공고 하오니 해당 차량소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(이전 또는 자진폐차)하여 주시고 또한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만일,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(폐차)처리됨은 물론 차량소유자 또는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,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, 제22조(20-150만원 범칙금)에 의거 통고처분 할것이며, 또한 동법제 81조 제1호(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)에 의거 관할검찰청에 송치 하게됩니다.
3. 또한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않을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09년 02월 16일 ~ 2009년 03월 10일

나. 대상차량 : 따로붙임(29모1258외 19건)

다. 강제(폐차)처리시기 : 2009년 03월 20일 이후

라. 강제(폐차)처리장소 : 관내 폐차장

마.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

바. 문 의 처 : 서구청 교통행정과 (☎ 032-560-4962)

붙 임 : 무단방치자동차강제(폐차)처리내역 .끝.

2009년 2월 16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